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 귀하

본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및 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및 산하기관**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감사 박상훈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1281호)
감사 장연수

피감사자
직명 사무국장
성명 정진화

(별지 제1호 서식)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중원대학교)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중원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지적사항 없음
4. 부속병원 관련				해당없음
계				

붙임 : 1.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중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17년 5월 21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감 사 박 상 훈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1281호)
감 사 장 인 수 (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피감사 기관장
2017년 5월 21일	2017년 5월 21일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 (인)	중원대학(교) 총(학) 장 안 병 환 (인)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6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없 음	없 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중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16년 03월 01일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없 음	없 음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중원대학(교) 총(학)장 안 병 환 직인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전 화 02-761-6205
팩 스 02-761-6206
www.e-chon.co.kr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의 일반업무회계 및 동 법인이 설립한 중원대학교 교비회계의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그리고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합산자금계산서, 합산운영계산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인은 동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이 적용한 회계원칙과 중요한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수익사업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일반업무회계와 동 법인이 설립한 중원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각각의 재무제표와 그 합산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사업회계의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은 주석 가-9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 기숙사 등에 대한 신축 및 학교 건물 증축 등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공사는 2015년 4월 괴산군 관리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였고 2015년 12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업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부지 내 불법으로 조성된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이 반려되어 2016년 1월 실시계획인가의 사업기간 연장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 청구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소하였으며 2016년 9월 패소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차 증축공사(46,309백만원)는 2013년 8월 31일 공사가 종료되어 당기 건물로 대체하였으나 미준공 상태이며, 증축공사 및 관련 전기공사와 부대공사 등 58,880백만원은 건설중인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의 2016년 2월 29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6년 4월 22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정석용 

2017년 5월 31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